

예산총칙

202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계	519,659,743	15,589,792
일반회계	457,443,159	13,723,295
특별회계	62,216,584	1,866,498
공기업특별회계	24,328,493	729,855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4,328,493	729,855
기타특별회계	37,888,091	1,136,643
수질개선 특별회계	14,315,337	429,460
주택사업 특별회계	6,743,842	202,315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839,899	25,197
자활기금 특별회계	2,208,366	66,251
산업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11,487,617	344,629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248,538	37,456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183,492	5,505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861,000	25,8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0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 한도액은 29,000,000천 원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15,589,792천 원으로 한다.

제 6 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일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재무활동 경비
- (3) 동일 부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 (4)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